

사천시 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2006-14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일자 : 2006. 3 . 9.

제 출 자 : 사천시장

1. 제안이유

사천시 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- 「공무원여비 규정」 개정(대통령령 제19270호, 2006.1.12)에 따른 「사천시 공무원여비 조례」 일부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근무지내 출장시의 여비 지급단가 상향 조정
 - 근무지내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 : 1만원→2만원
 - 근무지내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 : 5천원→1만원
 -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공무원(감액) : 5천원 감→1만원 감

4. 주요토의과제 : 없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따로붙임

나. 예산조치 : 27,360천원

- 운전원 관내여비 부족분 : 60,000원× 38명 × 12월

다. 합의 : 기획담당관실

라. 기타

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따로붙임

2) 입법예고 (2006. 1. 17~2. 24): 결과 제출된 의견없음

3) 규제심사 :해당없음

사천시 조례 제 호

사천시 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사천시 공무원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 본문중 “1만원”을 “2만원”으로 “5천원”을 “1만원”으로 하고,
같은조 단서중 “5천원”을 “1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련 법 령 발 취

【 지방공무원법 】

지방공무원법 제59조(위임규정)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 또는 당해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

【 공무원 여비규정 】 (대통령령 제19270호 2006. 1. 12개정)

제18조(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) ①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만원을,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. 다만, 「관용차량관리규정」 제4조 및 동 규정 별표 1에 의한 전용차량배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,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

②제1항에서 “근무지내 국내출장” 이라 함은 동일시(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)·군 및 도서(제주도를 제외한다)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.